|  |  |  |
| --- | --- | --- |
| **일부 업종 기업의 산재보험료** **납부방법**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0호《일부 업종 기업의 산재보험료 납부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제56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장 尹蔚民2010년 12월 31일**제1조** 《산업재해 보험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방법에서 일부 업종 기업이라 함은 건축, 서비스, 광산 등 업종 중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건축시공기업, 소형 서비스기업, 소형 광산기업 등을 가리킨다.전 항에서 지칭하는 소형 서비스기업, 소형 광산기업의 구분기준은 《중소기업 기준 잠정규정》(國經貿中小企 [2003] 143호)을 참조 집행한다. **제3조** 건축시공기업은 건축시공 프로젝트를 단위로 프로젝트공사 총 건설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제4조** 상업무역, 요식, 숙박, 미용미발, 목욕탕 및 문화오락 등 소형 서비스기업, 그리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영업면적에 따라 보험가입 인수를 확정하여 소재 통합지역의 직전 연도 종업원 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과 상응하는 납부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영업면적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제5조** 소형 광산기업은 총생산량, 톤당 임금 및 상응하는 납부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제6조** 이 방법 중에 열거한, 일부 업종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제7조**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部分行业企业工伤保险费****缴纳办法**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0号　　《部分行业企业工伤保险费缴纳办法》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56次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1月1日起施行。　　　　　　　　　　　　　　　　　　　　　　 部长 　尹蔚民　　　　　　　　　　　　　　　　　　　　　　　 二〇一〇年十二月三十一日　　**第一条**　根据《工伤保险条例》第十条第三款的授权，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部分行业企业是指建筑、服务、矿山等行业中难以直接按照工资总额计算缴纳工伤保险费的建筑施工企业、小型服务企业、小型矿山企业等。　　前款所称小型服务企业、小型矿山企业的划分标准可以参照《中小企业标准暂行规定》（国经贸中小企〔2003〕143号）执行。　　**第三条**　建筑施工企业可以实行以建筑施工项目为单位，按照项目工程总造价的一定比例，计算缴纳工伤保险费。　　**第四条**　商贸、餐饮、住宿、美容美发、洗浴以及文体娱乐等小型服务业企业以及有雇工的个体工商户，可以按照营业面积的大小核定应参保人数，按照所在统筹地区上一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一定比例和相应的费率，计算缴纳工伤保险费；也可以按照营业额的一定比例计算缴纳工伤保险费。　　**第五条**　小型矿山企业可以按照总产量、吨矿工资含量和相应的费率计算缴纳工伤保险费。　　**第六条**　本办法中所列部分行业企业工伤保险费缴纳的具体计算办法，由省级社会保险行政部门根据本地区实际情况确定。　　**第七条**　本办法自2011年1月1日起施行。 |